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춘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553

발의연월일: 2024. 8. 5.

발 의 자:이춘석·안호영·윤종군

윤준병 · 김윤덕 · 이기헌

조 국・정준호・안태준

이원택 · 위성곤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선유도표지, 방호울타리, 가로등 등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·운영하고 있음. 한편, 시장 등은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확보하기 위하여 신호기 및 안전표지와 같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·운영하고 있음.

그런데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이 서로 연계되어 설치·관리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·운영되어 해당 부속물과시설이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하여 예산상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 이는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주체가 상이한 경우가 있기 때문임.

이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 · 운영하려는 경우 교통안

전시설을 설치·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의 연계성을 높이며,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하고,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이 적재적소에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여 도로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30 조제2항 신설). 법률 제 호
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「도로교통법」 제3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·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(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)	제30조(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)
(생 략)	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
	<u>수</u>)
<u><신 설></u>	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부속
	물을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에
	는 「도로교통법」 제3조제1항
	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
	•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
	하여야 한다.